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5. 21.(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원제 부위원장 (1인)

---

##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21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22-104~11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배경은,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참여연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MSO 및 통신사의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조사 대상은 MSO 영업점 12개사 및 통신사 영업점 25개사, 총 37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주)에치티피, (주)에스지글로벌, (주)크리에이, 수만텔레콤은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유진텔레콤, (주)에스지글로벌, (주)크리에이, (유)비전에스아이, (주)나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신방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에스지글로벌, (주)크리에이, 수만텔레콤, 수민텔레콤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방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되고, 이루어진 행위가 舊 정보통신방법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업점별로 이러한 3개 종류의 위반사항이 종합적으로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첫 번째로 시정명령입니다. 8개의 영업점에 대해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6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관들이 조사할 당시에 미암호화된 파일을 다 암호화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일체를 즉시 파기하는 등 시정조치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정보통신방법 제28조, 제23조의2 및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되, 다만 소상공기업(종업원 2명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3개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정보통신방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주)에치티피, (주)에스지글로벌, (주)크리에이, 수만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다만 수만텔레콤은 소상공 기업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유진텔레콤, (주)나래, (주)에스지글로벌, (주)크리에이, (유)비전에스아이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에스지글로벌, (주)크리에이, (유)비전에스아이는 소상공 기업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舊 정보통신방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수민텔레콤, (주)에스지글로벌, (주)크리에이, 수만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에스지글로벌, (주)크리에이, 수만텔레콤은 소상공 기업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6개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 산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일 심의·의결해 주시면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이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조사대상이 모두 37개 영업점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중에서 시정명령은 8개 영업점,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6개 영업점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37개 중에 29개는 특별히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제재를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MSO 내지 통신사의 영업점들인데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않습니까? 위반한 경우가 8개인 반면에 제대로 하고 있다는 데가 29개라는 것은, 그래도 상당수는 규모가 작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십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가 계속 이런 저런 계기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아서 하든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인지를 했든 아니면 이번처럼 민원이 접수되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해서 이런 조사를 쪽 하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특별한 시사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보완해야겠다”, 아니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겠다”든지..., 이런 사건별로 조사·제재하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임무이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적·제도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얻어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이나 홍보, 점검 중 어느 쪽을 더 강화를 해야겠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지요.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직접 조사를 나간 조사관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37개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적용했을 때 많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사업자이고 1인 기업이나 2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 관련된 조치사항들에 대해 다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조사할 때, 그때서야 이런 부분들이 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알게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보통신망법 관련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나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쉽게 접근해서 그런 부분을 자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난번에 선불폰 관련해서 의결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주로 교육, 제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사대상업체라고 하더라도 조사가 끝나고 시정명령 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면, 인터넷진흥원과 같이 기술적인 측면이든 법·제도적인 측면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매뉴얼을 전달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거나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방통위나 인터넷진흥원에 묻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가 됐든 이렇게 조사를 당한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높아질 텐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노력을 함으로써, 조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원도 해 준다, 기술적인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법·제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해 준다는 기관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벌을 주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업체들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법규를 잘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고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얼마 전에 개인정보보호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버 무료설치 지원사업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제재대상으로 올라온 이런 업체들도 그 지원대상이 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지원 요청을 해 올 경우, 보안서버 무료설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사업을 비롯해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쪽 정리해 보면, 대형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부과해야 하지만, 물론 저희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해 가볍게 처리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아무래도 영세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그와 관련된 교육이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와 제재 일변도보다는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홍보를 열심히 한다면 이런 영세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이런 행위들을 더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건의 성격, 특성을 보고 제재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진신고가 아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 사무처가 인지한 건도 아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건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은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통해 들어왔다면 그중에 직접 피해를 당한 어떤 시민이 시민단체에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제기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응한다고 할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쪽에 어떻게 처리했다고 통보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자들이 그런 법제에 대해 잘 몰랐다..., 무지했다면 교육·홍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도 책임의식이 취약했다,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이고 귀찮기 때문에 안 했다면, 구법은 벌금, 과태료이고, 신법은 형사고발로 되어 있다면서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형사고발 조치하되,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심하다면 형사고발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훈방조치에 해당하는 각서를 받고 다음번부터는 절대 안 하기로 약속을 받고,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봐줄 수 없다, 가차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정명령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영세사업자들이 많다고 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하는 종사자 수나 매출규모로 봤을 때 작은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재산형, 경제벌, 경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 과태료는 조금 안 맞을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가능성은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제 점검기간을 정해서 자진신고를 받든가 해서 자진신고하면 면책시켜 주겠다, 그리고 교

육시켜 주겠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해 우리가 정말 공유해야 한다, 그런 일 제 점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다른 부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디지털 인터넷 문화 향상을 위해서도 이제는 성찰의 시기를 우리가 아주 엄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점검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그때 자진신고를 하면 면책해 줄 것이고 그 대신 교육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인데 7페이지에 과태료 기본방향에 '다만, 소상공인 기업(종업원 2명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이라고 했는데 앞에 '연 매출액'이라고 적어주시지요. 연 매출액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사업자 설명회, 그다음에 매뉴얼을 마련해서 홍보, 교육하는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MSO 영업점이나 이동통신 영업점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저희들의 한정된 인원으로 자진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두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제안한 것들을 한목에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다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MSO 영업점과 이동통신사 영업점 같으면, MSO나 이동통신사에 각각 그 영업점으로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이런 매뉴얼이나 교육자료를 만들어 보내는데,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제재를 받은 사례를 나열하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잘못되면 이런 과태료 또는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리면서, 자료는 가능하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간단하니까 한 번 읽어보고 시행해 달라는 식으로, 사업자 설명회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고, 또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 또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전자적인 루트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설명회 자료나 이런 매뉴얼은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올려놓고 상세한 자료는 참고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인원 부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와 그 비율을 신설하는 한편,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조정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과징금 산정시 현행은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과징금’에서 감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해 주시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붙임>의 일부개정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전에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감경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의결사항)**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22-11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이전에 보고가 이미 되었던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지금 행정예고 이후에 들어온 의견을 종합해서 일부 수정이 가해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가능하면 종전에 보고된 것을 또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의견이 들어와 반영되어서 수정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행정예고를 했으며, 여기에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와 지역방송협회의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제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지역민방협회와 지역방송협회에서는 저희 세부 심사항목 중 '광고매출 배분 실적 및 계획'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허가시 네트워크 내 지역민방 광고 매출 점유율 25% 준수 조건을 부과해 주고, '광고매출 배분 관련 지역민방의 의견서 제출 여부'를 '심사시 고려사항'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총 광고매출 중 전파료 비중이 아래 <표>를 보시면 50% 이상임을 감안하여 '광고매출 배분 실적 및 계획' 세부 심사항목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접수된 의견을 일부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결합판매 지원 실적 및 계획' 항목을 행정예고한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구사항인 광고 점유율 25% 조건 부과와 의견서 제출 여부는 재허가 고시에는 반영할 사항이 아니고, 세부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행정예고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역민방 광고 점유율은 2012년에 SBS와 지역민방이 체결한 'SBS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에서 정한 것으로, 합의가 종료되는 '17년에 사업자간에 논의할 사항이며, 지역민방의 의견수렴은 저희가 재허가 심사 전에 실시하여, 재허가 심사시 심사위원들에게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안 수정입니다. 심사사항 '네트워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매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30점과 관련해서 세부 심사항목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 간 광고매출 배분 실적 계획은 10점에서 15점으로, 비결합판매 지원실적 및 계획은 10점에서 5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6월 30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용어의 문제인데 3페이지 주요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에 '네트워크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방안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4페이지 행정예고안 수정에 보면 심사사항 '네트워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매출 지원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3페이지에는 '지원 방안 이행실적'인데 4페이지에는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용어가 약간 다른데 그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같은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붙임 1>로 했던 고시안 <표>를 보시면 <2>번 항목에 큰 심사항목으로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매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점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안건> 3페이지의 주요내용 부분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지역·중 소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매출 지원 실적...'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완전하게 해 주시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검토 결과에 보면 '의견 일부 수용'해 놓고 '총 광고매출 중 전파료 비중이 절반 이상임을 감안하여' 이런 말이 있고, 그 밑에 <지역민방 광고매출 구성 현황>에 '광고매출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를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미디어법상은 '광고매출 배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위에 전파료라는 말을 그렇게 바꾸든지..., 어쨌든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주요 제출 의견'을 보면 주로 지역민방 쪽에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현재 미디어크리에이트 하나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행정예고안에 대해 그쪽에서 의견 낸 것 중에 주요한 것은 없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의견제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22-11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다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통해 들어온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의견이 반영된 것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 3일 위원회 보고 후에 4월 9일~4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제출의견 하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안 중에 ‘그 밖의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장애인의 시청권보장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단체 등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경우에 의무를 유예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차원에서 정부지원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해서 ‘그 밖의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를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하게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에서 제시한 경감 또는 유예 적용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경감 또는 유예 시에도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하여, 방송사업자가 일정 정도의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안 수정은 복지부 의견 수용 및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를 2호로 바꾸고, 2호를 1호로 바꾸고, 3호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의견이 없음을 회신했고, 장애인단체 등에도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경감, 유예의 신청 및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및 고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록으로 남으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4페이지의 참고표시 있지 않습니까? '위 수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 추가 의견이 없음 회신',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께서 우리가 의견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수정안을 가지고 재차 협의했을 때 동의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보고사항)

### 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안)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생들이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미디어 꿈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전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분야 시범운영을 작년에 4개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1학기에는 13개교를 선정하여 각 지역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종합 미디어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자유학기제가 각 교육청 단위로 실시됨에 따라 위원회도 전국 5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미디어 분야 참여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와 자유학기제 운영주체인 교육부간 정책적 협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센터와 교육청 간에는 대전, 강원, 부산, 세종, 인천, 광주가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은 금년 10월 중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방송사, 장애인단체, 주요기업, 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절차입니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희망학교 모집 및 접수를 하고, 센터와 학교에서 교육지원 및 운영을 하며, 향후 마치고 나서 성과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진로탐색', '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3가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표>에서는 '진로탐색', '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교육 유형별로 자유학기제의 추진내용과 5개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적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1학기 지원현황입니다. '진로탐색 과정'의 센터별 미디어 체험에 대해서는 30개교가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 미디어 체험관을 활용하여 방송직종 역할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디어분야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 '동아리활동 및 선택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는 부산 화명중 등 1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광주 운암중, 대전 월평중, 강원 사북중에 현장 방문해서 특강 및 견학하실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학기 13개교, 2학기 67개교 등 총 80개교를 지원하고, 2016년도에는 100개교, 2017년도에는 300개교로 확대하며, 연계 프로그램도 금년도 15개에서 내년 21개, 2017년도에 23개로 각각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2학기 동아리활동 및 선택프로그램 과정 지원계획은, 부산 22개교 등 67개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입니다.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는 '참여자 설문', '교육평가회', '시상 및 홍보'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커리큘럼 개발,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강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운영방안,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육 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해 '16년 교육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창작한 우수작품 시상 및 성과물에 대해 시청자미디어페어 행사에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제작 프로그램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방송사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장 및 유명방송인 강사 초청 특강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 MOU 체결을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11월에 개최하고, 학생들의 창작 우수 작품 시상 및 작품 전시도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4페이지에 학교별로 프로그램명이 쪽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프로그램명 내지는 프로그램 내용은 해당 학교 측에서 수요를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까?

○ **김종영 시청자지원팀장**

-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학교와 교섭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프로그램 내용이 참 좋은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아서 여쭙 봤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일정 중에 위원장님이 특강하시는 것은 위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유명방송인 강사'라는 말이 있는데 '유명방송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연계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미디어분야에 대한 꿈과 끼를 찾아주고 향후에 진로탐색을 모색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장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을 운영하는 MC나...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방송사의 아나운서 또는 주요 기자나 전직 언론인 등이 학교에 방문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빼고, 김재영 위원님이나 고삼석 위원님이 여기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2학기 때는 저희가 67개 학교로 확대하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고 '유명방송인'에 해당이 되는지 여쭙 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유명방송인'이라고 하니깐 너무 제한되는 것 같아서, 두 위원님께서 가지면 강사료를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활용할 수 있게 용어를 다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가지 않으시는, 격오지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할 능력은 없고 같이 체험하면서…, 제가 꿈과 끼를 키우기에는 울드 하기는 하지만 같이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상임위원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자유학기제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장에 방문해서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것에 덧붙여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인터넷 윤리에 관한 교육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방통위원회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센터를 총괄하는 재단이 출범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시청자들의 방송참여와 더불어서 미디어 교육과 같은 지원사업을 재단의 주요한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보면, 주로 저희 쪽 관련 업무와 교육업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만하게 상호 협조하면서 진행되는데, 이것의 기능이 커지고 사업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중복으로 한다”, “부처 간에 업무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소관에 미디어센터가 있고, 문화부 소관에는 영상센터가 있고, 또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센터가 있고 이런 다양한 기관들 간의 연계, 협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총괄을 누가 해야 합니까? 또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문화부 또는 지자체와 관련된 미디어교육을 하거나, 영상미디어센터들과 협업을 하거나 또 지역방송사나 지역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중복을 피하고 잘 운영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 간 협조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영역 다툼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 특히 어린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역량 증진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인 것이 맞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제작 교육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넷 윤리교육을 비롯해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능력, 분석능력, 주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평가능력 그리고 창조능력입니다. 보면 우리가 제작역량에 집중하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결국 기관들 간에 또 역할 분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미디어 리터러시 각 분야별로 이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역량 증진,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이용 역량 증진과 관련된 정책기조나 정책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수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열악한 재정과 인력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재단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이해와 활용능력을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향후 미디어 전문가로도 양성하고 미디어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국에 5개가 있고 앞으로 2개가 더 구축됩니다. 지금은 각각 운영되는 상황입니다만 시청자미디어재단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협업하고, 미디어 교육교재 개발이나 미디어 교육목표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비전도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야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정책 시행은 방통위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역할을 하겠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본부에 미디어재단이 발족됐고, 우선 이 안건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보고했는데 미디어 교육, 시민교육, 문화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되고, 중학교 대상인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실천 영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인터넷 윤리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운전자는 많이 양산됐지만 운전자의 시민의식, 운전자의 윤리교육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교통문화 문제의 경우와 똑같은 것으로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영상 활용방안을 실습 체험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윤리와 문화의식, 시민의식을 소홀히 하면 아까 자동차 문화의 한 축이 취약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과목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선택해서 자유학기제를 많이 듣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잘못하면 교재와 강사들이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선해서 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13개교, 연간 예산 2억 5,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훨씬 더 확대해서, 정말 문화시민 교육을 중학교 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교육부와 잘 협의해야 할 것이고, 우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텐데, 정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 문제가 아직도 걸려 있어서 많이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교육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은 현장에서 미디어재단이 맡아서 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 성과모니터링과 평가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물론 교육을 맡아서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책을 입안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사후평가가 아니라 사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디어재단과..., 아니면 인터넷진흥원도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윤리교육의 교재를 편찬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거기에 방통위가 사전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교육의 소기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씨, 이제는 내정자도 아니고 임명장을 받아서 취임식도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재고하고 사퇴해 주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비해 절반의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통위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선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본인이 숙고해서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분이 2012년 대선정국 때 활동했던 SNS 내용까지 다 찾아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 때 분명히 어느 한 편을 든 것입니다. 그때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냈을 때 그것을 옹호하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불과 며칠

전에 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고위간부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군 간부들의 활동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시민교육,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방통위 손을 떠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국회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기타 논의사항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재홍 위원님과 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석우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문제 그리고 재단의 공정한 운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당연히 이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그리고 시청자에 대한 도리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이와 관련하여 일언반구도 없었고,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묵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가 이사장 취임사를 읽으면서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이석우 씨 임명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임명절차와 결정 내용에 대한 의혹이, 제가 제기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권의 정쟁에 비유하는데, 저는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인사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 임명이 법이 정한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법과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2월에 수원지역 부장판사 한 분이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9,000건이 넘는 막말 댓글을 쓴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 민주화운동 폄훼, 유신독재 옹호, 특정지역 비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윤리적 표현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이 부장판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언론에서 조금 듣긴 들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사건 관련해서, 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었고, 권고의견 10호를 의결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도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권고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직후에 이 부장판사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사직서는 처리가 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했지만 이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공직자일 경우 자리를 비워주는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장판사 못지않은 분이 바로 위원장님께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석우 씨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석우 씨가 국무총리 공보실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활동했던 트위터 내용을 야당의 미방위원 한 분이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10건 중에 3건이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조롱하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신의 방송출연 발언을 비판한 시청자들을 좌편향이라고 매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보도자료를 읽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막말 댓글 판사가 사직한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번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인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트위터 발언도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증을 안 했다면 인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검증을 했음에도 인사를 한 것이라면 한마디로 국민을 그리고 시청자를 무시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우 씨 트위터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석우 씨는 여의도 국회나 정당으로 가셨으면 역할을 제대로 하셨을 분인데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잘못 갔다, 이사장으로 잘못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야기가 조금 변질되기는 했는데, 우선 자유학기제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자유학기제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정종기 실장님, 매번 참석하시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이렇게 별도 꼭지로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자미디어센터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작년에 시범 운영이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됐다면, 저는 이것이 앞으로 아주 유망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언제쯤 준비가 됩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지금 각 국으로부터 예산안 수요를 받아서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이후라도 각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5월 말 아니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5일까지 우리가 기재부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언제까지요?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6월 5일까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내려왔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을 부처별로 짜는 것이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울산, 서울 포함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센터까지 구축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센터를 활용하는 쪽, 운용하는 쪽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같은 경우도 미디어교육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재단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내년도 예산이 부처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증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김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증액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서, 결국에는 방송기반국에서도 그렇고, 기조실에서도 그렇고, 예산안 전체를 보면서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예산을 최대한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실장님께 여쭙 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 건은 보고사항에 포함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있는 전체회의 심결사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내년도 재단과 센터의 사업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의결사항이지요?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통상적으로 예산에 대한 내용은 보고 드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수결로 접수할 수 있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만, 통상적으로 이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다 동의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센터나 재단의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위원회의 핵심적인 사업영역으로 잘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이사장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문제

제기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 전체회의의 논의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에게 법원에 있는 부장판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그분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부장판사는 법원 현직에 있으면서 트위터나 SNS를 통해 그런 의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석우 신임 이사장은 제가 알기로 총리실의 공직에 있거나 특히 이사장 취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그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법원의 판사 케이스와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직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 자리를 내어놓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간인으로서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개인이 어떤 이념적·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 종편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양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사적영역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처럼 중요한 위치를 탐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검증이 제대로 됐다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직해야 할 사안이라면 그런 분들을 임명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사장이 어떠한 성향의 발언을 하였고, 또 그것이 일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것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제가 임명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곳밖에는 안 가봤지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느낀 것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에 내세웠을 때는 중학생들로부터 좋은 선택을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접근해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을 던져서 학생들이 그것에 따라오도록 한 다음에 그 안에 적절한 교육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보여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학생들로부터 호응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나중에 성과모니터링 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좋은 의견이 나오겠지만 우선 올해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으로 인해 예산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 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한 말씀만 제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예산을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이사장으로 가 계신 분이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들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표시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입장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 ○ 김재홍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권한과 직무를 정관에서 잠시 봤습니다. 말하자면 리더십입니다. 그런 분이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국에 5개 권역별로 하나씩 있고, 그 권역에 여러 미디어센터들이 있습니다. 방통위 산하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고, 문화부 산하에 중소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든 미디어센터가 있고, 문화방송 방송문화진흥회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만든 미디어센터도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여러 종류의 영상미디어센터를 협력 지원하는 업무, 말하자면 일종의 통할업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방통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 중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미디어센터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협의회의 주관 역할이 바로 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이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직접 담당할 수 있고, 시민단체 활동에 예산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정치적 편향활동을 했던 분이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으면 저는 그 지원예산을 결코 지원하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으려면 조직을 위해, 방통위를 위해, 2세들의 미디어교육의 장래를 위해 본인이 빨리 용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5월 28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0분 폐회 】